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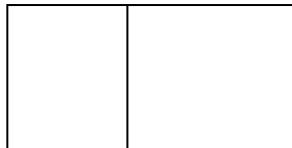
## 구매론 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고객 (인)

주소 \_\_\_\_\_



구매론 약정서 사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	-----

\_\_\_\_\_ (이하 ‘고객’ 또는 ‘구매기업’이라 한다)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을 통한 구매론을 이용하여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이하 ‘판매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매론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 1조 목적

이 약정은 고객이 합의한 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매론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구매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이 그 구매의 만기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이후 구매자로부터 상환받는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2. 구매기업: 은행과 구매론 약정을 체결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3. 판매기업: 구매기업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구매론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할인신청한도 : 구매기업이 시스템에 등록한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서 (invoice) 상의 거래대금 중, 판매기업들이 시스템에서 할인을 신청하는 거래 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
5. 거래승인: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시스템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하고, 이에 대한 구매론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할인: 판매기업이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만기일전에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7. 만기일: 구매론 거래승인시, 해당 구매론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만약,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은 은행 익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8. 할인금액: 판매기업이 만기일전에 은행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함으로써 부담하는 대가 또는 그 금액을 말한다.
9. 승인수수료: 시스템을 통해 구매론을 이용하는 대가로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0. CD금리: 한국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특정잔존기간의 수익률표상 CD(91일물)의 전일 수익률을 의미한다.

### 제 3 조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

- ① 구매론의 할인신청한도 및 거래조건은 <별표> 구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고객은 은행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한하여 구매론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구매론은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 공급에 따른 대금결제 용도로만 사용한다.

### 제 4 조 할인율 및 수수료

- ① 판매기업은 만기일 전에 할인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판매대금만을 지급받는다.
- ② 이 약정에 따라 고객이 은행의 구매론으로 결제할 금액을 판매기업이 만기일 전에 할인받는 경우, 판매기업에 적용할 할인율은 할인일의 CD 금리에 할인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할인가산금리는 <별표> 구매론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은행은 판매기업이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는 본 약정에 따른 할인된 판매대금의 입금일이나 만기일에 차감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승인수수료는 결제조건과 상관없이 만기일에 상환 받는 것으로 한다.

## 제5조 거래승인

- ① 고객은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구매론을 이용하여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할 내역을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에 승인요청 한다. 다만, 고객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거래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팩스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팩스에 의한 거래승인 요청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익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위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팩스를 통한 거래승인 요청건은, 은행이 은행에 신고된 고객 인감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여 거래승인을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동 승인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은행은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금액이 제3조에서 정한, 할인신청한도 내에서 요청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제3조의 할인신청한도와 거래조건 정상거래로 승인처리한다. 고객은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기로 한다.
- ④ 고객은 구매론으로 승인된 거래 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에 한해서 만기일 전영업 일까지는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 즉,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 신청하여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⑤ 만기일은 거래승인일로부터 **최장 6개월**로 하며 고객이 거래승인을 요청할 시점에서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만기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거래승인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하여 거래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인을 재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구매론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매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할인신청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4. 승인요청일로부터 만기일을 6개월 초과하여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5. 고객 또는 판매기업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하여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신용상태가 정상인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승인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6. 1년이상 거래승인요청이 없는 경우
7. 협의 가공거래 등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8.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등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전산시스템 장애, 인터넷망의 장애,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 제 7 조 할인된 금액의 입금

- ① 판매기업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시스템, 우편(등기우편, 편의점서비스 및 전문택배업체(DHL, FEDEX 등)를 이용한 서비스) 또는 은행 내방을 통하여 은행에 할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기업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판매기업은 할인 신청서 발송 즉시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우편에 의하여 할인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우편에 의하여 할인 신청을 할 경우, 은행은 할인 신청서상의 예정 할인일에 할인된 금액을 판매기업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자우편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통지한다. 다만, 은행이 예정할인일보다 늦게 할인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판매기업에게 동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후 판매기업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할인신청건을 처리하기로 한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할인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판매기업은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팩스에 의해 할인신청을 수령한 경우, 은행은 동 할인 신청을 접수일 익영업일에 처리하며, 해당 거래 할인조건을 전화를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통지한다.
- ④ 제 3 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팩스를 통한 할인 신청은, 은행에 신고된 고객 인감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여 할인신청을 처리하기로 한다. 상기 할인 신청과 관련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 ⑤ 판매기업의 할인신청에 따른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할인금액 = 할인대상금액 × (할인일의 CD금리 + 할인가산금리) × 할인일수 ÷ 365

(윤년은 366 일로 적용한다.)

(할인일수는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 ⑥ 할인신청에 대한 거래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은 할인대상금액에서 할인금액과 승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기업이 지정한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만기일 전일까지 판매기업의 할인신청이 없는 경우, 은행은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지정한 판매기업 명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한다.

## 제 8 조 구매론 상환

- ① 고객은 구매론 상환을 위하여 은행에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야 하며, 구매론 이용대금은 지정된 만기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에 고객의 구매론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할인율을 일할 적용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② 고객은 구매론 거래승인 후에 물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판매기업과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한 경우, 또는 고객이 거래승인을 취소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구매론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만기일에 구매론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만기일 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 이 경우 할인신청한도는 은행의 판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승인된 거래 중에 할인되지 않은 거래는 은행에 의해 승인취소될 수 있다.  
\* 연체이자 = 연체금액 × (만기일의 CD 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일수 ÷ 365  
(윤년은 366 일로 적용한다.)
- ④ 판매기업이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승인분의 만기일 고객과 합의된 시간에 일괄적으로 구매기업의 지정된 계좌로부터 구매대금을 인출하여 해당 영업일 중 판매기업에게 송금하기로 한다. 지급정지명령 및 계좌잔액부족 등으로 구매대금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의 자금 미수취에 따른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 9 조 면책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를 적용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2.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의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3.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사항

#### 제 10 조 압류, 가압류 지급제한 사유 발생시 처리

- ① 고객과 판매기업은 은행이 거래승인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 등이 이를 압류, 가압류하거나 판매기업이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이미 거래승인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이를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제1항의 사유 발생시에는 은행에 구매론 거래승인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소정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기거래승인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한 경우, 또는 거래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구매론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은행에 그 해소 사실 및 구매론 거래승인에 관한 판매대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고객과 은행은 그 시점부터 이 약정에 의한 업무를 재개한다.

#### 제 11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고객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 및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제4조 제2항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 제 12 조 효력 및 약정 기간 등

- ① 이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만료일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약정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 ③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3 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고객과 은행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과 다를 경우,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다만 여신에  
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이 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 제 14 조 언어

이 약관은 국문 외에 영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 별 표 > 구매론 신청서

(해당 항목의 ‘□’에 ‘√’ 표시하고 약정내용을 기입)

	(금 )원 (₩ )원		
할인신청한도	(금 )원 (₩ )원	약정만료일	년 월 일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CD 금리 (제 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연체가산금리	( )% *연체이자율=만기일의 CD 금리 + 연체가산금리		
할인 방법	판매기업이 임의 신청하는 방식에 따름		
할인 가산금리	<input type="checkbox"/> 단일 할인 가산금리 ( )%		
승인수수료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구매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정액제	승인건당 ( )원	<input type="checkbox"/> 양 당사자
	<input type="checkbox"/> 정률제	승인금액의 ( )%	
타행이체수수료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판매기업 부담	건당 수수료 (₩ )원
약정기간 자동연장 통지 희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